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5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29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재원이 이동하는 전입금을 의미하나,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용된 “「교육시설법」 제30조제2항”은 동 기금의 조성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- 또한 동 기금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써 법적근거가 사라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어야 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인용된 “「교육시설법」 제30조제2항”을 삭제하고, 조성재원을 각 호를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1항).
-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(안 제15조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”로 하고,

안 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안 제15조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</li> <li>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li> <li>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</li> <li>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li> <li>5. 그 밖의 수입금</li> </ol>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.	〈삭 제〉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

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
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
3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
**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교육행정국장
2. 기금출납원: 시설기획담당 사무관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심의위원회 설치)**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**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획조정실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

2. 위촉직 위원: 기금 운용,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,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**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

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해촉)**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5.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2조(간사)**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